



: 2020-10-0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42026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김민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문준영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61,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5,047,426원 및 그 중 545,047,426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2020.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콘텐츠 및 콘텐츠 관련 유통, 수출입업, 광고사업, 광고대행업, 이벤트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3. 11. 설립된 회사이고, C은 피고 발행 주식의 58.13%(2017. 12. 31.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3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5.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8. 5. 28.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될 당시 피고가 원고의 해임 사유로 든 것은 '① 2017년 매출액 감소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경영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② B 핵심 사업군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이다.

라.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인데, 위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경우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0. 3. 30.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에 관한 주장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남은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18,858,200원(= 월 기본급여 15,528,200원 + 월 업무활동비 3,330,000원)을 현금 환산한 396,161,751원(= 18,858,200원 × 21.0074¹⁾), ② 자녀학자금 7,741,935원, ③ 종합건강검진비 4,618,232원, ④ 원고의 남은 임기에 대한 퇴직연금 상당액을 현금 환산한 116,525,508원(월 기본급여 15,528,000원에 지급률 4개월을 곱한 62,112,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⑤ 원고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지급받았을 특별퇴직공로금 20,000,000원, ⑥ 이사 해임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인 565,047,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1) 계산의 편의상 2020. 3. 28.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22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함



원고에게는, ①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실적 저조, ② 사규 위반의 투자행위 및 배임행위로 인한 핵심사업의 실적 부진 초래, ③ 무단결근으로 이사의 임무 미수행 등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손해액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급여(월 15,528,200원)가 아닌 이사 급여(월 13,199,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② 업무활동비, 자녀학자금, 종합건강검진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의 임원퇴직연금 지급규정 제9조에서는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④ 특별퇴직공로금은 재임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에게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한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퇴직공로금 상당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3) 예비적 상계 항변

원고는, 영화 부가판권 사업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과 이사회 부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별다른 담보확보조치 없이 투자금 전액을 일시 선납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사규 위반 및 임무위배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약 16억 4,500만 원 정도의 투자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실적 저조

갑 제4, 17, 20, 23 내지 27, 4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경영실적 악화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거나 원고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실적 저조'는 원고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피고의 2016년(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제17기) 매출액은 약 603억 원, 영업이익은 약 26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22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제18기) 매출액은 약 506억 원, 영업이익은 약 1억 9,000만 원, 당기순이익은 약 -7,800만 원 정도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의 매출액 감소는 콘텐츠 매출(B에서 제공되거나 이동통신사, 국내 포털사 및 해외 등에 판매되는 드라마, 예능 등 디지털 콘텐츠 매출)액 이 2016년 약 452억 원에서 2017년 약 294억 원으로 감소, 특히 중국 등에 대한 해외 콘텐츠 매출액이 2016년 약 160억 원에서 2017년 약 36억 원으로 급감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매출액의 감소는 중국 한한령(한류금지령)의 영향으로 기존의 중국 업체와의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그 원인이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매출의 경우(2016년에는 총 매출의 약 89%, 2017년에는 총 매출의 약 58%) C에서 제작한 자체 콘텐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D노동조합 E 본부가 2017. 9. 4.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는 등 자체 콘텐츠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 2017년에는 C 본사와 C 산하의 지역 방송사의 매출액 및 영업



이익 역시 2016년에 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매출액 감소에 이 사건 파업 및 프로그램 제작 중단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해임된 이후인 2018년(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제19기) 피고의 매출액은 약 510억 원으로 2017년의 매출액인 약 50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약 8억 9,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7년 피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경영위기를 타개할 만한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특별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하여 피고의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꾀하였고(2017년 피고 사업보고서 제161쪽 참조), 실제로 2017년 피고의 판매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73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⑤ 또한 원고는 SRT 객차광고대행사업 및 물품납품사업, 아이돌 스타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사업다각화 및 피고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달리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상실을 야기할 만한 경영실패 사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사규 위반의 투자행위 및 배임행위로 인한 핵심사업의 실적 부진 초래

갑 제29호증, 을 제27, 28,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규를 위반한 투자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영화 부가관련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규 위반



의 투자·배임행위로 인한 핵심사업의 실적 부진 초래'는 원고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사규 위반의 투자행위 및 배임행위는 주주총회 결의 당시 제시된 해임사유도 아니다.

① 피고는, 원고가 핵심사업인 영화 부가판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영화 편수 쪼개기 등을 통하여 5억 원 이상의 콘텐츠 판권 구매 투자의 경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피고의 투자심사제도 규정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규 위반의 투자행위 및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의 업무관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기간 동안 여러 개의 콘텐츠 판권을 구매하더라도 각 개별 콘텐츠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투자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명백히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콘텐츠 판권 투자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이사회 부의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영화 편수 쪼개기와 날짜 변경을 통한 분리계약을 통하여 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나 이사회 부의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고가 사규 위반의 투자행위라고 주장하는 투자계약의 절반 이상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투자가 결정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로 다음날인 2017. 3. 31.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수입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로부터 유통할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투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위험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입사가 제작사 또는 배급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 수입사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영화 부가판권 사업 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에 관하여 '추가 작품 또는 대체 작품 제공, 판권료의 일부 반환, 극장 배급 수익 분배'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하여 피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무단결근으로 이사의 임무 미수행

원고가 2018. 3. 30.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행위가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정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으로 이사의 임무 미수행'은 원고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원고가 2018. 5. 28.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2018. 3. 30.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사실상 피고의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제공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8. 3. 30. 이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월 급여는 지급하였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결의한 2018. 5.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은 해임사유로 거론되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고가 먼저 원고를 피고의 업무에서 배제하여 원고가 이사로서의 업무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에 의하여 업무에서 배제된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또는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등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 산정의 기준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②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④ 설령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졌음이 전제가 되는데, 대표



: 2020-10-05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정해졌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 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 청구 부분

1) 원고의 임기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2020. 3. 30.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사 보수의 액수

가) 원고는, 대표이사의 기본급여 월 15,528,200원과 업무활동비 월 3,330,000원의 합계 월 18,858,200원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일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임기 만료일 2020. 3. 30. 이전인 2020. 3. 28.까지 22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임일인 2018. 5. 28.의 현가로 환산한 396,161,751원(= 18,858,200원 × 21.0074)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임기 전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손해액의 산정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가 아닌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아닌 이사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는 월 13,19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의 보수 상당 손해를 산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15,528,200원이 아닌 13,199,000원으로 한다.

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업무활동비 월 3,330,000원은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에게도 업무활동비가 지급되었다거나 위 업무활동비가 이사의 지위에서 받은 보수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활동비 월 3,330,000원은 원고가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입은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구체적으로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원고의 임기 만료일 2020. 3. 30.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28.까지 22개월 동안 매월 13,199,000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해임일인 2018. 5.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77,276,672원(= 13,199,000원 × 21.0074,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자녀학자금 7,741,935원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학자금지원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직원의 자녀의 학자금으로 대학생의 경우 연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상의 실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8.경 및 2018. 1.경에 학자금으로 각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학자금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임기만료일까지 학자금이 지원되는 대학생이고, 원고가 실제로 자녀의 학비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종합건강검진비용 4,618,232원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277,276,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청구 부분

1) 퇴직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가) 피고는 피고의 임원퇴직연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9조에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9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연



금 청구권을 특별히 박탈하는 규정으로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의 조화를 이루려는 상법 제385조 제1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즉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그에 대한 임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해임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본인의 해임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연금의 액수

가) 인정사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에서는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에 관하여, ① 이사는 확정급여형(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과 확정기여형(매년 퇴직연금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근속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② 확정기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이 퇴직하는 연도의 경우 이전 부담금 납부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하며, ③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은 임원 선임 후 만 1년 단위로 각 지급하고, ④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 지급액은 기본월봉에 근속기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연금의 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4개월분, 평이사의 경우 3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여 2017. 3. 28. 부터 2018. 3. 27.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62,112,800원을 2018. 3. 30. 지급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의 기본급여 월 15,528,200원을 기준으로 남은 임기 2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124,225,600원[= 매년 62,112,800원(= 15,528,200원 × 4개월) × 2년]을 원고의 해임일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116,525,508원[= ① 59,628,287원(= 62,112,800원 ÷ (1 + 0.05 × 10/12)) + ② 56,897,221원(= 62,112,800원 ÷ (1 + 0.05 × 22/12))]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구체적 계산

(1) 원고는 이미 대표이사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연금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아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퇴직연금 상당액은 확



정기여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또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남은 임기 동안 이사로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월 기본급여 13,199,000원을 기준으로 임기 2년 동안 이사의 퇴직연금 지급률인 3개월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결국 원고가 남은 임기 동안 이사로 재직하였다면 2019. 3. 30.과 2020. 3. 30.에 각 39,597,000원(= 13,199,000원 × 3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²⁾, 이를 원고의 해임일인 2018. 5. 28. 기준으로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① 38,013,120원[= 39,597,000원 ÷ (1 + 0.05 × 10/12)]과 ② 36,272,061원[= 39,597,000원 ÷ (1 + 0.05 × 22/12)]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74,285,181원(= 38,013,120원 + 36,272,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특별퇴직공로금 20,000,000원 청구 부분

1)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특별퇴직공로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13호증, 제4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7조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임원 중 재임 기간

2)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F은 2018. 3. 28. 월 기본급여 13,19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39,59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위 계산금액과 동일하다.



동안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의한 퇴직연금 이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일부 임원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특별퇴직공로금을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없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관행적으로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 사건 퇴직연금 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공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원고의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위자료 20,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수모감, 명예의 실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적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나462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27292 판결 등 참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피고가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영화 부가판권 사업 투자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사규 위반 및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약 16억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영화 부가판권 사업에 관하여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규 위반의 투자행위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의 어떠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81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행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예비적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1,561,853원(=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 277,276,672원 +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 74,285,1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0-10-05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진민희

 판사 장민주